

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	2648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.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·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,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신건강 상담료 지원(본인부담금 면제)을 위한 법률적 규정 마련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안 제1조)
- 나. “정신건강검진” 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,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.(안 제5조)
- 다.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(15. 4. 2 공포)
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(어르신 복지과, '14.4.22)
- 나. 예산조치: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사정에 따라 탄력적 편성
- 다. 합 의: 별도합의 필요 없음
 - (1) 입법예고: 2015년 10월 15일 ~ 11월 4일 (별도 의견 없음)
 - (2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 - (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(이하 “정신건강검진”이라 한다.)”이란 50대를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“검진기관”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검진비(이하 “검진비”라 말한다.)”란 “정신건강검진”을 위해 정신건강검진·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.
3. “정신건강검진기관(이하 “검진기관”이라 한다.)”이란 관내의료기관 중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“정신건강검진”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50대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
2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

제4조(검진기관의 선정) “정신건강검진”을 위한 검진기관은 절차에 의해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“정신건강검진”대상은 50대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자로,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내용)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) ① “정신건강검진”을 실시한 “검진기관”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“검진기관”명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지원 대상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진료내역
3. “검진비”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구청장은 “검진비”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.

제8조(지역협의체의 구성·운영)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정신보건심의(심판)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.

제9조(지역협의체의 기능)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
2.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
3. “검진기관” 지원 및 모니터링,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
4. 그 밖에 구청장이 “정신건강검진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 구청장은 “정신건강검진”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(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)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환수조치 등)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『지방세기본법』 제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“정신건강검진”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